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01 월 28 일

청 원 인

성 명 : 김동연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김동연																		
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김동연 외 7명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저희는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이 해외 수출가격과 다른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p> <p>본 청원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p> <p>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시장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 23조 1항에 9호를 신설하여 개정합니다.</p> <p><b>신구문대조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td> <td style="padding: 5px;">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td> <td style="padding: 5px;">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td> </tr> <tr> <td style="padding: 5px;">&lt;중략&gt;</td> <td style="padding: 5px;">&lt;중략&gt;</td> </tr> <tr> <td style="padding: 5px;">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td> <td style="padding: 5px;">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5px;">9. <u>국내시장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u></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5px;">    가.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국내·외 판매 시 차이를 두는 행위</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5px;">    나. <u>공정거래위원회 아래에 특별 부서를 새로 신설하여 관리·감독하게 한다.</u></td> </tr> <tr> <td></td> <td style="padding: 5px;">    다. <u>조직에 관한 규정은 제 48조에 준용한다.</u></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중략>	<중략>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u>국내시장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u>		가.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국내·외 판매 시 차이를 두는 행위		나. <u>공정거래위원회 아래에 특별 부서를 새로 신설하여 관리·감독하게 한다.</u>		다. <u>조직에 관한 규정은 제 48조에 준용한다.</u>
현행	개정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중략>	<중략>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u>국내시장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u>																		
	가.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국내·외 판매 시 차이를 두는 행위																		
	나. <u>공정거래위원회 아래에 특별 부서를 새로 신설하여 관리·감독하게 한다.</u>																		
	다. <u>조직에 관한 규정은 제 48조에 준용한다.</u>																		

소개의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H 기업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J모델이 동일한 파워트레인 탑재 모델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 기업이 국내과점시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국내 판매 가격을 해외시장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국 내에서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이 자국 기업의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역직접 구매”라는 말도 생겨났다. 동시에 자국민들에게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도 감소와 같은 문제가 맞물리고 있다.

더불어 국내 S, L 기업과 같은 일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와 국내의 제품가에 차별을 두고 있어, 자국민들에게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 역차별 성화에 대해 기업에서는 “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비교는 무리”라고 주장하며 교묘히 사양에 차이를 두어 역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기업의 가격 정책의 검열이 시급하다.

## 2. 주요골자

□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의 금지에 대해서 국내시장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자국시장의 제품가에 외국시장의 제품가와 큰 차별을 두어 차별을 피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기관인 국내기업제품가선정위원회를 두어 해외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가격과 국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가격을 각 각의 제품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전문경제전문가, 현지경제전문가, 기업파견기술전문가, 전문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안정적인 가격을 선정하도록 도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3조의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중략>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중략>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u>국내시장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u> 가.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국내·외 판매 시 차이를 두는 행위 나. <u>공정관리위원회 아래에 담당 부서를 두어 관리·감독하게 한다.</u>

다. 조직에 관한 규정은 제 48조에 준용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